

제438회 국회
(임시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31일(월)

장 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38회 국회(임시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평등가족위 22대 국회 후반기 제가 소위원장으로 처음 선임돼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날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저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그룹핑으로 저희가 받도록 사전에 토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수용 의견인 경우에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10시02분)

○소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심사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회계 등에 대한 내용이고, 지적사항은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출 및 기금 지출에서 건립사업, 보조사업, 출연사업 등 사업 유형을 불문하고 집행 부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나 추진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과징금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과징금 체납액 수납률 제고 및 징수관리 강화 필요하다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의 반납금으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고 미수납액도 상당히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장기 미수납액의 회수 계획을 수립하라는 등의 시정 또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 대부분을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등 일반 재원의 활용과 정부출연금 등 자체 재원 확충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5번입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과관리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러면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먼저 연번 1번,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성평등부에서는 현재 지자체별로 보조사업의 실행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사업 전반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 수용합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체납정리위원회를 통해서 불납결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채권관리 강화도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 수용합니다.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는 미수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직접 전화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금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섯 번째, 성인지 예·결산 성과관리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향후에 주요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사항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 과징금 미수납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과징금의 수납률 저조 사유를 보면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교부 시에 지원 대상을 철저히 챙기고 또 부정수급 발생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재교부를 재검토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연희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시정요구 유형 중에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건데 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도개선 외에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시정요구를 받아들이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지만 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예를 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를 위탁한다든지 또 세액체납정리위원회를 통해서 불납결손도 처리한다든지 하는 채권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앞

으로 국세청에도 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등 징수 절차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시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의 요구도 있고 제도개선 요구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강력한 시정을 받아들이겠다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시정을 받아들이는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뭘 어떻게…… 이전의 방식에서 크게 이것을, 제도 자체를 원상 복구하거나 회수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제도개선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차관님, 저도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는 질문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이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인데 정부에서 2번 항에 대한 시정을 받아들이는다고 하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중 어떤 방식으로 이걸 시정하겠느냐는 질의거든요.

차관님, 질문을 충분히 납득하셨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어쨌든 이걸 시정의 방식은 그러면 정부에서 받아들였으니까 그대로 하시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24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사업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의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취하든지 면밀히 파악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정을 받아들이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까 말씀드린 2번 사항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어쨌든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체납이 되는 경우는 주로 국고보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사전 절차들을 이행을 안 해서, 쉽게 말하면 추정 편성이 제때 안 돼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반납 계획서를 받는, 월별로 챙기도록 하고 하는 그러한 이행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건 시정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하고 주의하고 제도개선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치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차관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주의 정도 아니면 제도개선 정도의 대응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금 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정확하게 시정에 관련되는 항목의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계속 걸돌아요, 질문과 답변이.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사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했으면 합시다라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시정으로 받아들이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러시면 주의로 변경을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더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차관님, 어쨌든 지난 이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예산이 잘못 잡혔는지 아니면 같은 문제가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시정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항이 아니에요. 이게 성평등가족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자체에다 주의를 주고 지자체한테 빨리 편성해서 집행해라, 그러면 다른 부처나 이런 데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평등가족부만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은 제대로 된, 국민의 세금을 잘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나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관께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그것 한다라고 그래서 다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역할들, 제도개선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이게 불법, 부당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강선영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제가 했는데 제가 주의로 변경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감사합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로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소위원장 강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곽상언 위원 다들 말씀하시니 저도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3번 항목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을 보게 되면 과징금 같은 경우에 수납률이 지금 4.8%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경상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납률이 65.3%입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하게 되면 과징금이 특히 지금 징수율이 매우 낮지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매우 낮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채무자들이 파산한 경우도 있고요. 또……

○곽상언 위원 그것은 일단 개별 사유고요. 일단 과징금 전반에 대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 제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집행하고 있는 근거 법률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근거 법률의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과징금 부과 대상자들의 재산 현황 때문에 지금 미납이 나타난 것인지를 분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과징금 체납률이 높고 수납률이 매우 낮다면, 그것이 성평등가족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서 공통된 것이라면, 달리 말씀드리면 전 부처에 걸쳐서 4.8%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면 과징금 제도가 잘못되었겠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어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금전적 이행을 구하는 것이 형벌로서 구하는 것은 벌금이고 형벌 이외의 것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는데 지금 이 과징금의 징수율이 낮고 수납률이 낮다는 것은 전 부처에 걸쳐서 검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는 어떠한지 그리고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각 법률에 대해서는 수납률이 어떠한지 현황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 대응책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작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2025년의 과징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한 경우나 재정 부족, 재력 부족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쪽의 여러 가지 성범죄 피해지원 시설들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어서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단체가 파산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확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과징금 제도 전반 또 법률 근거 이런 데 대한 문제라기보다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평등가족부에서 좀 더 회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언 위원 진단을 하려면 현황 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전반에 대한 문제라면 전 부처에 걸쳐서 과징금 체납률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나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과징금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집행 근거가 되는 법률의 문제라면 성평등가족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다른 부처에 비해 낮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현황부터 파악하셨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안 했을 것 같아서 여쭙보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다른 부처하고 과징금 체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부처하고 비교는 못 해 본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리고 수납률이 낮고 체납률이 낮다면 이게 실제로 강제집행의 예에 준해서 집행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강제집행 사항도 아니고 채무자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곽상언 위원 그것은 아주 일부 사유, 현황 중에서도 일부 현황이거든요. 일부 현황을 전체 원인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전체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결산 심사자료 1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로 변경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시정……

○이수진 위원 주의 아니에요, 주의?

○소위원장 강선영 2번만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대해서 제도개선……

○이수진 위원 3번도 주의로 좀 해 주시지요.

○임종득 위원 지금 손솔 위원님하고 김소희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강선영 5번에 대해서 제도개선입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2번과 3번은 주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2번은 주의, 3번도 주의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할 수가 없다고 느껴서 제가 주의로 변경했는데 차관님, 이것 진짜 한번 시정으로 해 놓으면 행정부 측에서 이것 시정하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시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주의로 바꿨는데 차관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시정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시정하는지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주의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다음, 6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성평등정책관실 소관 사업들입니다.

연번 6번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성평등정책 조정·협약과 관련해서 양성평등분과위원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고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으로만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동 위원회들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면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7번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유인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과제 이행 관리 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자체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9쪽,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5년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연례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로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 및 예산편성 내실화 필요하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9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진흥원의 전체 교육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고 일반인 대상 교육도 대면교육 과정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6번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통합·조정, 부처 협업 강화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

겠습니다.

7번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과제에 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주의를 수용합니다. 여성사박물관 건립 부지 변경은 지금 세종시로 변경해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9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공무원에 편중된 성인지교육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6번 관련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아마 장관님이 오시면서 그래도 대면회의가 꽤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장관 임용 절차라든지 시간이 꽤 소요가 됐고 또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다시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여기 주의 의견 대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동의합니까?

그러면 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안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손솔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강선영 예.

○손솔 위원 여성사박물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소위원장 강선영 몇 번이지요?

○손솔 위원 8번입니다.

세종시로 추진하겠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부지가 최종 확정인 겁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세종시 어진동 문화시설용지에 3000평방미터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추정이 가능합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총사업비도 협의가 돼서요, 곧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솔 위원 이게 보면 2022년부터 집행이 됐으면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마주하는 게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당초 불광동의 여성인권진흥원 부지에 건립할 계획을 진행했습니다마는 그 불광동 연구단지가 정부의 주택공급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손솔 위원 사정은 알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던 건 아니니까요. 이거를 다시 완전하게 재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세종시에서 추진되는 게 시일이 이미 대단히 늦어졌기 때문에 빠

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주의를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도개선을 얘기했는데 불광동에 처음 계획 세운 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부지에 포함된 것도 그게 불법이나 부당한 것도 아니고. 사전, 전제 조건이 실제로 다른데 이게 주의가 맞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만약에 같은 케이스로 공사가 늦어지거나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 퀘스천입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님, 그 부분은 불광동에서 정말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하던 여성사박물관이 안착할 단계에서 다시 이전하게 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진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여러 가지 기반적인 절차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31년 정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세종시에 2031년 확실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겠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시는 거지요? 제도개선 수용하고 위원님들 동의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번에 대해서 제도개선, 8번에 대해서는 주의, 9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11쪽입니다.

3번 고용평등정책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중에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새일센터가 전체 159개소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직업교육훈련사업 같은 경우에 유관 취업률이 50% 내외에 머물고 있고 새일여성인턴사업의 경우 인턴 종료 후 6개월 내지 12개월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성과지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로는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 유지 성과관리 강화, 성과지표 개선,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참여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11번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개별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12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입니다.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복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 공표 사업주의 실질적 여성 채용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10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직업훈련과 경단예방 서비스 확대, 인턴 사후관리 그리고 성과지표 개선도 제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여성인재양성·사회참여 확대 사업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의를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시다만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위원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소위원장 강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차관님, 방금 세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한번 쭉 보시면 대부분이 성과지표의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현상을 반영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도개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결산 심사자료 10번은 제도개선, 11번도 제도개선, 12번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심의자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14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인권정책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13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들 중에 피해자 기념사업과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지표가 다들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14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관 운영 출연금 근거만 있고 사업 출연금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15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과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각각 편성·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통합 등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16번 역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하위법령에만 있어 법률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17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인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사업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업무와 관련한 업무 공간 부족, 정규직 인력 부족, 종사자 심리치유 지원 제도 등의 부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공간 확충, 인력 확보 등과 종사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18번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비는 편성되어 있지만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은 현재 설치·지정이 없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설치 의무가 있는 인신매매 등 방지 관련기관의 미설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9번, 양성평등기금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5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중 4개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집행하고 있고,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예

산 증액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1쪽입니다.

20번, 역시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13번 의견에 대해서 우리 부는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공모전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성과 측정을 위한 대체지표 개발도 적극 검토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이 부분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사업 출연금 출연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위안부 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분들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몇 분 안 남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더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여성인권진흥원이 피해자 문제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디성센터 종사자의 쾌적한 공간을 바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서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신매매방지법상 지역인권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변경하고 또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는 등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번입니다.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무료 법률 사업의 예산 비목을 일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금 26년, 27년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예산 당국과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지금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디성센터를 2021년도에 가 보고, 그때 한 20분이 넘게 삭제 지원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보니 2배 이상 인력이 늘었는데 그때도 공간이 좀 작았었거든요. 컴퓨터가 짝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공간 확보가 어려웠는데 그 옆에 계셨던 임대 들어왔던 분이 나가셨다고,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졌으니까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차관님, 14번이요, 사업출연금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 아셨을 텐데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지적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시정을 드렸는데 제도개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중간쯤 주의로 받으시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이 부분은 사실은 ‘운영에 관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처의 법률례에 따라서 운영과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김소희 위원 바로 가능한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바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때 일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러면 바로 시정이 가능…… 이걸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15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이것 제가 시정을 드렸는데 제도개선 요청 주신 대로 하고.

18번은 저는 이것 인신매매 관련이라 주의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사안의 시급성이 좀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인신매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없고 또 법도 없으면 지역에서 협조를 얻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중앙에서는 지금 지역 업무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이수진 위원 법 개정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이게 그냥 성평등가족부 혼자 하는 거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라고 할 텐데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은 지역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될 거고.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적극적으로 성평등가족부에 협조가 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건지, 몇 개라도 만들어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실행이 담보되는 것 아닙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인신매매방지법 권익보호기관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가져오고 또 권역별로 설치하는 근거를 이미 임시에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중앙권익보호기관만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인신매매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전 지자체로 넓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셨지만 제도개선으로 법도 개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권익보호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제가 차관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쪽 보면서 질문거리가 생기는 것이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역에 관련되는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임종득 위원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할 방법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역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다 임무를 줘서 그 부분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자체에 임무를 줬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 지금 지역별, 지자체별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 것 아니에요?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평등가족부의 조직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평등가족부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예산 문제와 조직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평등가족부의 직속기관, 소속기관, 지방에 소속기관들을 두어서 이런 업무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참 이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행자부에서 주겠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래서 위원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우리 성평등가족부가 사실은 중앙부처 중에서 소속기관이 없는 부처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정말로 지방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지방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할 조직의 손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권익보호기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 했을 때는 중앙사무로 일단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방으로 좀 이전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면 진짜 지방조직을 키우고 싶으면 다른 명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명분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성매매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안부를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왜냐하면 다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박상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언 위원** 지금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8번 사항입니다. 인신매매방지 기관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는 이 인신매매 보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국장이 한번 답변……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인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중앙에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중앙권익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다만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착취·성매매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가사무와 연계된 업무가 스펙트럼이 넓어서 지방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미애 의원님이 7월 1일 날 법을 발의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중앙권익보호기관하고도 연계체제를 같이 가지면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직접 핸들링하면서 지역에서도 협조를 구할 부분은 지역권익보호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법적 의무가 맞는지 여쭙보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의무가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예.

○**박상언 위원** 그러면 법적 의무가 맞으면 이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서 중앙도 설치해야 하고 지방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예.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이 설치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가기관이든 혹은 지방자치단체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예.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냥 의견만 말씀하세요.

법적 의무가 있는데, 법이 규정하고 법이 강제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건 그냥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다 틀린 내용입니다. 전부 틀린 내용이에요.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없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중앙부처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3개의 기관이 전부 다 법률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평등가족부는 당연히 법률 위반을 지적해서 행자부, 예산처,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저희 중앙……

○곽상언 위원 그런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22년도부터 수요조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설명회도 갖고 계속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달라, 설치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 보낸 적 있으십니까?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계속 의견 파악하고 수요조사하고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 보낸 적 있으십니까?

○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폭력예방교육과 과장 박정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에 협조 촉구할 때 문서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에 이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언제까지 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여쭙어보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2년도부터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한 예로 22년 10월 그리고 23년 3월에 시도에 추가 공문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범운영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요청을……

○곽상언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시범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어떤 지자체나 중앙부처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앙부처의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고 성평등가족부가 그것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의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단 차관님 답변 그다음에 정책관님 답변으로 중앙부처의 법률 위반을 확인했고 해당 지자체의 법률 위반을 확인했어요.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는데 이행 요구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꼭 확인해서 나중에 간사님께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드릴게요.

○소위원장 강선영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손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솔 위원 18번 인신매매 관련해서 저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꼭 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신매매라고 하는 말을, 인신매매라는 네 글자를 들으면 별로 우리나라에 없을 것처럼 여기거나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폭력피해자 지원 이렇게 하면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각을 갖는데 인신매매라고 하면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로 대응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책임자 한 명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급성을 좀 높이기 위한 인식 자체를 개선해 가면서 실행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17번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20번 해바라기센터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해바라기센터는 사람들이 아예 찾지도 않게 돼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다 3교대잖아요. 둘 다 3교대로 대응해야 되는, 24시간 다 풀로 돌려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중인 거지 이것 처우개선 안 해 주면, 지금 해바라기센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예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각 항목별로 처우개선을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것은 최저임금 이런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올 예산에 공통 처우개선 외에 또 고강도 일자리 추가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비율 이렇게 해서 약 7% 이상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강도 일자리라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

회를 우리 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서의 종사자들 처우개선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통으로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고강도 일자리에 대해 추가되는 것,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다 상당한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올해 이 정도로 하고 또 계속해서 예산 증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요 여기는 기관 이전하면서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공간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슬 위원** 옆 사무실 공간은 바로 그게 가능한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지금 80여 평 되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4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좁습니다. 저도 가서 봤지만 그쪽에 일하는 분들이 정말 번아웃 될 정도로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국회 때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손슬 위원** 이 피해자지원센터 공간 확충 관련해서요?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예.

○**손슬 위원**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지금은 별도의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손슬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예, 예산국회 때 반영 추진해야 됩니다.

○**손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리할 게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14번·15번 시정이었는데 제도개선으로 다 변경하시는 겁니까?

○**김소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선영** 차관님, 18번에 대해서는 아까 박상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가족부가 현행법 이행의무가 없다면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도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해석을 두고 우리 부에서는 ‘둔다’ 하니까 의무규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중앙사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치를 독려하고 수요도 받고 했습니다. 아까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면담 회의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근거를 나중에 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임미애 의원이 이 부분을 아예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해서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권역별로 권익보호기관을 두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강선영 그래서 시정하시라고요, 그렇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 의견을 주시면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시정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13번은 제도개선, 14번 제도개선, 15번 제도개선, 16번 제도개선, 17번 제도개선, 18번 시정, 19번 제도개선, 20번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자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계속해서 다섯 번째, 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1번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사업이 대부분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쟁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22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서 집행 부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 집행실적의 편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실집행 부진 대책 및 바우처 이용률 제고 필요 등에 대해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23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가 현재 복수의 기관과 프로그램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별로 실적에도 차이가 있고 또 실제 입소 비율도 낮게 나타나는 기관이 있으며 사후연계, 재개입 여부, 후속 성과 같은 것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연계,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24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가 배치된 센터가 전국 240개 센터 가운데 37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확대 배치 및 지역별 인력배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25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이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6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집행액 중 상당 부분이 건설보상비로 집행되어 실제 공사 진척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계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7번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입니다.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매우 낮은 편이고 총사업비도 증가했고 사업기간도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용·이월·불용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의 반복적 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8번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무요원의 실제 근무기간과 배치 시점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자체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며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21번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해당 연구용역이 사실은 경쟁입찰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의계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 더 많은 연구기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집행 관련해서 주의도 있고 제도개선도 많이 주셨습니다라는 많은 분들이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의 제도를 개선해서 여성청소년들이 행복하도록 또 온라인·오프라인 여러 가지 구매처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마트에서도 6개 행복카드가 있습니다라는 이마트에는 5개 카드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이소라든지 여러 가지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앞으로 상담 이후에도 치료·치유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제도개선에 수용합니다. 전담상담사가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54명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증액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주의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정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9월에 공사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광주 디딤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의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설계·발주·착공 단계별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립 광주센터도 9월에 공사 계약이 체결돼서 10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시다라는 주의로 통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 동구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은 그동안 사전 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시다라는 이 부분도 12월에는 착공 가능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거는 지자체하고 예산집행 계획도 검토도 하고 또 매월 실행행로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차관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개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편차, 집행률이, 이용률이 낮은 거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전에는 이용률이 더, 신청률하고 이용률이 더 컸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11% 정도까지 낮아진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우처 지원 방식을 변경해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행행률이 13.8%p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지난해보다 10%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행행률도 올라가니까 차이는 없어질 거고.

그 지역적 편차가 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현물 지원하거나 학교·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서 바우처 이용률이 실행행률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3.5%로 평균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여성청소년 대상 보편 지원을 지금 월 1만 4000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서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하는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조금 약간 떨어지는 지자체에다 공유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박상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언 위원** 저는 24번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의견 드리겠습니다.

24번을 보게 되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과 관련한 것이고 그중에서는 디지털미디어 피해 전담상담사를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면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로 명칭이 지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배치된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고 배치되지 않은 비율이 84%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치되어 있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84%에 이르는 상담소는 지금 미디어 과의존 대응 상담업무까지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담사는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집행되지 않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상담사는 과업무를 맡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 해당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의 문제는 아닌데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발생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까 제가…… 지금 240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거기에서 37군데에 54명이 전담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전담상담사를 투입해 가지고 많은 업무 분담을 좀 줄여 가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담상담사가 없더라도 과의존에 대한 상담을, 그건 일반상담사들이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담상담사를 더 확보해서 배치한다면 기존에 하던 분들의, 일반상담사분들의 업무를 아마 조금 줄여 갈 수는 있는데 관건은 이 54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걸 적어도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군데에 1명씩이라도 배치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국회 증액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상담사가 지금 미디어 과의존 상담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 상담을 하는 시간을 파악하셨는지, 그 노동강도를 파악하셨는지, 줄여 줄 필요는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셨어야 되고 그 실태 파악을 통해서 이 집행을 100%까지 언제까지 끌어올릴 것인지를 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평등가족부가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사실은 일반상담사분들도 과의존 청소년 상담은 할 수 있고 그 업무에는 들어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할 수 있고 그것이 적정하다면 이 전담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

이지요, 처음부터. 이 사업 폐지해야 되는 건데.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지만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상담 전문기술 또 이런 걸 가진 분들을 좀 더 배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상담사들의 업무 분담을 좀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전문상담사 확보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게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최소한 일반상담사가 지금 이 업무, 디지털 피해 상담 업무를 하는 시간을 파악해야 되고, 다른 업무를 하는 시간을 파악해야 되고 혹시 과노동에 지금 몰리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집행률을 언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부분 지금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일반상담사·전문상담사의 직무분석을 좀 더 하고요. 이게 국회 증액 과정에서 이렇게 일반상담사들의 노동강도 이런 문제도 좀 언급을 하면서 증액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님께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업무도 맡기고 국방부 업무도 맡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직무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차관님, 이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라든지 또 전담상담사 배치, 어쨌든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니까 해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 교육부랑도 좀 연계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학교에 따라서는 핸드폰 프리존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끼리 회의를 해서 학교 수업에, 학교에 오면 핸드폰을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자체 노력들을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친구들과하고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집중이 더 높아졌다 이런 평가들도 자체에서 하는 걸 제가 직접 그 학교 가서 들어 봤거든요, 학생회장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관련 복지업무 하시는 분들 임금이라든지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막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현장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청소년 보호든 아까 해바라기센터든 기타 디성센터든 24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은 특히나 야간근무에 대한 건강권이라든지, 야간근무 실제로는 수당을 더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촘촘하게 건강을 위해서 야간근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자꾸 그걸 기획예산처에서 받아 내셔야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이수진 위원** 그래야지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고 물론 임금, 겨우 최저임금에서 몇 푼 더 주는 정도의 수준이라 그래도 상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습시다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획 예산처에다가 할 건 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자체에다, 생리용품 관련해서 제가 2022년도에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관한 청소년복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예산 마련이라든지 집행 계획에 대해서 초기 1년만 잘하시고 그다음에는 3개년에 맞춰서 계획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자체에다 넘기셨는데……

이게 또 지자체에 넘어가서도 지자체가 이걸 확대하는 데도 실제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편 복지 차원에서 하지만 지자체한테 맡겨 놓으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시군구로 내려가면 더 심해집니다. 아무리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내려보내도 시군구에서 단체장들이 ‘나는 이거 하기 싫어’하고 예산편성 안 하면 또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보편 지원으로 좀 가 주셔야 얼마를 집행했니 안 했니, 누구는 썼니 안 썼니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법안이 변경됐고 변경된 법안에 맞는 취지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의 생리대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계속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업 문제, SNS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사실은 방미통위하고 우리 부하고 밀접하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는 그야말로……

○소위원장 강선영 차관님, 잠시…… 죄송합니다.

발언을 끝까지 듣고 싶으나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못 끝내면 오후 15시 반에 재개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5명인데 여기서 한 분만 점심 약속 있다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밤에 10시에 다시 제가 개최할 예정인데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닙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저도 질문할 거 많지만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있으니까 다시 그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실 걸로 생각하고.

21번 제도개선, 22번 제도개선, 김소희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김소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선영 23번 제도개선, 24번 제도개선, 25번 주의, 받아들이시지요?

26번 주의, 27번 주의, 28번 제도개선,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 25번, 26번은 주의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27번은 제가 시정을 했어요.

3건의 인프라사업 중에 이 25번, 26번은 그냥 단순히 집행률하고 불용 부분이지는 한데 27번 거는 실제로 전용된 부분도 있고 불용, 그러니까 집행률이 20% 아래로 너무 낮고 사업 기간도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25번과 26번하고는 차이가 커서 제가 시정을 드렸던 까닭입니다.

이 부분이 2건의 인프라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님께서 27번 주의를 요청해서 가지고 거기의 타당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청소년수련원, 사실은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 절차, 부지 문제라든지 인허가 절차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진행돼가면서 막 하다 보니까 건립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예산도 조정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구 동구의 이 사업도 그 과정에서 산업단지에 부지가 편입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지금 다 정리를 해서 올 12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의로 좀 변경해 주십사 했던 겁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차관님, 이거는 이 핵심이 지금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여기 안 계시지만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는 공사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큰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저도 시정을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저희가 성평등가족부 조직 개편이 지난해 10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17명이 정원 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 9억 6000만 원 이용하는 것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러면 이건 기획예산처 협의하에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윤세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 이거는 주의로 하겠습니까.

○**김소희 위원**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러면 27번 주의, 28번 제도개선, 이의 없으신 걸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정책관실입니다.

자료 30쪽입니다.

29번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연례적으로 실행률이 저조한 현상이 지적되었고 양육 외 학업과 주거 유지를 위한 실제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가구수 반영하는 동시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등

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1쪽, 30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돌봄수당 내내역사업은 정부지원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법령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명확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31번 역시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문제, 실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 새일센터의 직업훈련과정에서 참여자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에 영아돌봄수당은 실집행률이 614%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통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새일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간 통합적 연계,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적 및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적정 예산 추계 등에 대해서 제도개선, 시정, 주의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32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6년도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광역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양립하면서 역할 조정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광역지원센터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간의 집행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력·예산·운영 구조와 사업비 교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4쪽입니다.

33번입니다.

신규로 수행된 정보화전략마스터계획 수립 사업이 연도 중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므로 관련 비용의 전용은 불가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각각 연내에 이 시스템들이 개통 예정이므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철저히 잘 구축해야 된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5쪽입니다.

34번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사업출연금의 실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전액 교부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한 관련 홍보의 부족 문제, 인력 충원율이 저조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는 향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및 지급절차를 재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35번 양성평등기금 중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환수율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시도별 환수실적에도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수급 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징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급여수급자의 신고의무 안내 및 변동사항 신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37쪽입니다.

36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복지급여는 2025년도에 5382억 원이 실제로 집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수요 부족으로 145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지역별 대상자 추계와 신청 안내 및 발굴체계가 실제 수요와 충분히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 실집행 잔액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를 요구하며 미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납 촉구 등 보조금 정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8쪽입니다.

37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이 한부모가족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내역사업을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9쪽입니다.

38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원금액은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0쪽입니다.

39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전용상담전화 사업의 수행기관이 연초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을 수행한 점, 인건비 잔액을 그 재원으로 한 점 등이 지적되었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경우 사업 내용과 예산 비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해당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1쪽입니다.

40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내역사업들에 대한 원인을 점검하고 수요조사와 집행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2쪽입니다.

끝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경우 집행현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사태도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과 잔액 반납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29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청소년부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라는 집행률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개별법을 개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여러 가지 집행 관리에 관해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중에서 특히 공급 확대는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보유여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되지만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광역지원센터에 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가지고 아이돌봄센터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운영 체계 구축을 강화해서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내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연내에는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주의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2026년 10월에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었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많은 홍보 노력으로 26년에는 7월 현재 40.7%로 양육비 선지급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해 가고 또 인력도 많이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수급 환수는 계속해서 부진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도별 집행실적이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5년에도 실집행률이 97.4%까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정책연구사업을 위해서 예산 과목 변경은 이미 27년에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번입니다. 아동양육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한부모 가구 수 감

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축하고 또 신규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주의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족전용상담전화 관련해서는 노후 교환기 장애에 따라 가지고 상담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에서 전액을 활용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1번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성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는 사업도 개편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앞으로 더 힘을 얻어서 특성화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정부 의견 수용한다는 말씀드리고요.

35번의 부정수급 환수율이요, 지금 2025년 환수율이 7월 조사했을 때 개선이 됐다, 회복이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이수진 위원 한부모가족자녀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의 현실적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 김가로 가족정책관 김가로입니다.

부정수급 환수는 크게 두 가지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인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일 때 한부모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이나 재혼을 하게 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게 있고요. 소득·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것 환수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보통 저소득층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독려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설명을 들어 보니 한부모가족들이 형편이 어렵거나 바로 비용을 다시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강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부정수급 환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선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2025년 7월에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기 때문에 이걸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저도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는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결국에는 안 오시는 게, 모이지 않는 게 처우개선 문제가 핵심이고 임금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차관님, 31번은 제가 수정을 못 한 거고요. 설명을 하러 오서 가지고 설명을 듣고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번 부분은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잘 주셔서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번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건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게 지금 뭐가 있지요? 다 받은 것…… 38번은 시정 받으신 것 같고, 그렇지요?

○소위원장 강선영 38번을 제도개선으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의견……

○김소희 위원 시정 하신 것 아니었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제도개선으로 좀 변경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저는 설명이 좀 부족하셔 가지고…… 어쨌든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수행인데 또 인건비 잔액을 그 재원으로…… 아니구나.

38번은 감액을 하셨는데 또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러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시급해서 증액해서 집행을 못 했더라면 이해는 되는데 감액한 상황에서도 또 실행률이 낮은 사항이면 이것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부분은 사실은 대상자들 발굴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이러한 지원 시책이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홍보를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전에도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 방법을 좀 바꾸셨나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이게 청소년한부모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국가 광고 전광판도 송출하고 웹 포스터를 주민센터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실은 예산도 24년 예산 실행정보다 더 적게 25년도에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행률을 낮추는 것보다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대상자들이.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님, 저희가 금액은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김소희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 김가로** 참고로 25년도에 원래 35만 원이었는데 37만 원으로 인상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의견 없으십니까?

○**김소희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 수준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까 홍보 강화하고요 또 양육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 어필을 해서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 가구 수가 감소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편성되고 나서 다시 또 줄일 때 너무 많은 폭을 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 정도 감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 줄이면서 실제로는 금액을, 37만 원을 물론 늘리기는 하셨지만 조금 더 늘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제도를 개선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소희 위원** 이것 이번 연도를 마지막으로 제도개선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런 지적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38번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설명 듣고 보니까 제도개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36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반납이, 보조금 정산 관리를 강화하고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도개선의 설명이 2025년에 97.4%가 실제로 집행되었으므로 서서히 복구가 되어 가는 것 같으니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으면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39번 아까 말씀하시면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뒤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주의 하시겠어요, 시정 하시겠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주의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고민해서 써 났습니다.

어쨌든 이 출연기금은 연구용역비로 또 전용한 내용도 있고 전용은 자체의 행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소위원장 강선영** 전용을 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 규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계속 ‘주의하겠습니다’ 해 놓고 다음에 또 주의 하도록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41번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제가 주의라고 했는데 제도개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교부해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평등가족부가족정책관 김가로 가족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특성화 사업 예산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성화 사업 집행률은 작년에 92.7%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자체에 독려를 해서 실집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제가 성평등가족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집행에 대한 통제가 강한 예산보다는 기금 운용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걸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번 사업에 대해서는 주의로 제가 의견을 냈고 주의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차관님.

○김소희 위원 참고로 저는 시정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저는 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김소희 위원님은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주의로 바꾸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39번의 다문화 가족전용상담전화 담당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처우라든지 해당 직무를 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환기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교환기를 구입하는 데 인건비를 썼더라고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교환기가 없으면 전화상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장이 잦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이 나지 않는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예산이 있어서 이걸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상담하는 데 있어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더 확보하는 것도 부처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일들을, 상담 업무를 할 수 있게 필요한 기기들을 구비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장비들 바꿀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77-4206, 1577-1366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도 좀 더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화된 시설을 바꾸는 부분 그리고 인력도 결원이 많은데 이 부분 보충하는 방법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제도개선, 30번은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32번 제도개선, 33번 제도개선, 34번 주의, 35번 제도개선, 36번 제도개선, 37번 제도개선, 38번 제도개선, 39번 주의, 40번 제도개선, 41번 주의.

○이수진 위원 39번 제도개선 아니었나요?

○소위원장 강선영 아까 주의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주의입니다.

○이수진 위원 그랬나요?

○김소희 위원 맞아요.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 아, 주의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김소희 위원 주의를 받으셨어요.

○소위원장 강선영 예, 주의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0번 제도개선, 41번 주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하면서 추가적으로 차관님,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주의와 시정, 제도개선에 대해서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에 이번 결산안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징계나 변상은 없으니까 주의, 시정, 제도개선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주의, 시정, 제도개선 하시겠다는지를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각 의원실에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어떻게 조치한다는 계획을 잘 작성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요구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변상과 징계는 없고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1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부대의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시정, 제도개선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영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 위원장, 저한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성평등가족부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선영 곽상언 김소희 손솔 이광희 이수진 이연희 임종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입법심의관 강준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정책기획관 김권영

성평등정책관 조민경

고용평등정책관 김민아

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가족정책관 김가로